올해로 60주년 맞이한 산재보험제도 개선을 위한 제언

유성규
성공회대 겸임교수
공인노무사

들어가며

올해는 산재보험이 도입된 지 60주년이 되는 해다. 산재보험은 4대 사회보험 중 가장 먼저 도입된 제도로, 그동안 산재노동자와 그 가족이 의지할 수 있는 사실상 사회안전망이었다. 이는 지금도 변하지 않은 사실이지만, 지금도 산재보험이 사회보험으로서 제 기능을 다하고 있는가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평가가 많다. 이에, 올해로 60주년을 맞은 산재보험이 사회보험으로서 제 기능을 다하기 위해 개선되어야 할 지점들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한다.

‘모든 노동자에게 산재보험이 보편적으로 적용되어야 한다’

산재보험은 사회보험임을 천명하고 있으나, 아직 모든 노동자에게 보편적으로 적용되지 못하고 있다. ‘가구 내 고용활동’, ‘농업, 임업(벌목업 제외), 어업 및 수렵업 중 법인이 아닌 자의 사업으로서 상시노동자 수가 5명 미만인 사업’ 등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더욱이 최근 빠르게 증가하고 있는 플랫폼노동자, 프리랜서, 특수고용노동자 등 새로운 고용형태의 노동자들에게는 불완전하게 적용되고 있다.

사회보험은 그 적용에 있어서 차별과 배제가 있어서는 안 되며, 보편적으로 적용되어야 한다. 산재보험을 업종, 규모, 고용형태 등과 상관없이 모든 노동자에게 보편적으로 적용하기 위해 적용 범위를 대폭 확대해야 한다.

‘노동자가 산재보험을 신청할 수 있는 권리가 실질적으로 보장되어야 한다’

노동자가 산재를 당함이 명백하지만, 사업주의 은폐 압력으로 인해 산재보험 신청을 포기하는 일은 우리 주변에서 쉽게 볼 수 있다. 심지어, 노동자가 산재보험을 신청하기 위해 해고의 위험을 감수하는 일까지 벌어진다.

노동자가 산재를 당했어도 이를 산재라고 인식하지 못하는 일도 자주 발생한다. 산재보험에 대

한 정보 부족, 직업병에 대한 정보 부족 등으로 인해 산재보험 신청을 시도조차 하지 못하는 경우도 많다. 산재보험 신청이 건강보험 프로세스와 같이 최초 치료 단계에서 자동으로 이뤄지도록 하는 '선보장제도'의 도입 등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

'산재 인정 절차가 모든 노동자에게 공평해야 한다'

현행 산재보험에서는 노동자가 산재에 대한 입증책임을 진다. 따라서 노동자는 산재를 인정받기 위해 증거, 증언 등 입증자료를 스스로 확보해야만 한다. 입증자료를 확보하는 과정에서 사업주가 산재 인정에 부정적인 경우, 노동자는 매우 어려운 상황에 부닥치게 된다. 심지어 노동자가 입증자료를 얻기 위해 소송을 제기해야 하는 어처구니없는 일이 발생하기도 한다.

재정적 여력이 있는 노동자는 산재 인정을 위해 노무사, 변호사 등 전문가의 도움을 받기도 하지만, 재정적 여력이 없는 노동자는 소송 과정을 오로지 혼자의 힘으로 이겨내야 한다. 사회보험에서 노동자가 어떤 사업주에게 고용되어 있는지, 재정적 여력이 어떠한지 등에 따라 산재 인정 가능성이 달라지는 비상식적인 일이 발생하는 것이다. 입증책임의 전환을 위한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 산재 승인 전에 우선 보상을 시작하고 사후 평가를 통해 불승인된 사례에 한해서는 정산하는 '선보장제도'는 이 문제에 대한 효과적인 해결책이 될 수 있다.

'산재 보상에서 차별을 없애야 한다'

사회보험인 산재보험의 보상은 모든 산재노동자에게 공평해야 한다. 그러나 현행 산재보험에는 보상에 있어 차별이 존재하고 있다. 일례로, 61세 이상 노동자는 법에서 정한 일부 노동자를 제외하고는 휴업급여를 감액하여 지급받는다. 61세 이상 노동자에 대해 보상에서의 차별이 존재하는 것이다.

또한 특수고용노동자 중에 법에서 정한 일부 직종에 대해서는 실제 소득과 무관하게 고용노동부 고시로 정한 금액을 기준으로 획일적으로 보상이 이뤄지고 있다. 이는 행정 편의를 위해 사회보험의 역할을 포기한 대표적인 사례로 볼 수 있다. 산재 보상에서의 차별은 사회보험의 취지에 정면으로 반하는 제도적 흠결이다. 조속히 개선하는 것이 타당하다.